



유엔난민기구 의견서 서울행정법원 사건 2020 구단 17245

도입

1. 본 의견서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이하 “유엔난민기구”)에서 2020 구단 17245 사건과 관련해 제출¹하는 것으로, 해당 사건은 현재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2.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각국 정부와 협력하여 난민문제의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할 임무를 유엔 총회가 부여한 기구입니다.² 유엔난민기구는 따라서 본 사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규정에 따라, 본 기구는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체결과 비준을 촉진하고 적용을 감독하며 개정을 제안”합니다.³ 이러한 감독 책무는 1951 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년 협약”) ⁴ 제 35 조 제 1 항⁵ 및 1967 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 년 의정서”)에서⁶ 재차 명시하고 있습니다.

¹ 본 의견서는 유엔난민기구 및 그 직원들에게 국제법 문서와 인정된 국제법 원칙상 적용되는 여하한 특권 혹은 면책권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유엔총회, 유엔의 특권과 면책에 관한 협약, 1946 년 2 월 13 일, <http://www.refworld.org/docid/3ae6b3902.html>.

² 유엔총회, 유엔난민기구 규정, 1950 년 12 월 14 일, A/RES/428(V): <https://www.refworld.org/docid/3ae6b3628.html>.

³ 위의 글, 제 8 항 제 a 호.

⁴ 유엔총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51 년 7 월 28 일, 유엔 조약 모음집 제 189 권, 2545 호, 제 137 쪽, <http://www.unhcr.org/3b66c2aa10.pdf>.

⁵ 1951 년 협약 제 35 조 제 1 항에 따르면, 각국은 유엔난민기구에 협력을 약속하고, “이들 기관[유엔난민기구]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감독하는 책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⁶ 위의 글.

[영문 원본의 비공식 번역본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영문본을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유엔난민기구의 감독 책무 수행은 부분적으로 국제난민 법률문서, 특히 1951 년 협약과 1967 년 의정서에 포함된 조항과 용어의 의미에 관한 해석 지침의 발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지침에는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 년 협약 및 1967 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유엔난민기구 편람”)이⁷ 있으며, 본 편람은 여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들*로⁸ 보완됩니다.
4. 대한민국 법원은 1951 년 협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임무와 함께 1951 년 협약 제 35 조에 따른 체약국의 의무와 유엔난민기구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전문을 고려할 때 유엔난민기구 편람의 지침이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⁹ 본 유엔난민기구 편람은 캐나다, 영국, 미국의 대법원에서 “매우 관련 깊으며 권위있는,”¹⁰ 그리고 “매우 설득력 있고 권위있는”¹¹ 자료로서 “중요한 지침을”¹² 제공하며, “1951 년 협약 제 35 조에 따라, 당 기관이 협약 규정의 적용을 감독하는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할 체약국의 의무에 비추어 ‘상당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¹³

⁷ 유엔난민기구, 유엔난민기구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 년 협약 및 1967 년 의정서에 따른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2011 년 12 월, www.refworld.org/docid/5cb474b27.html. 유엔난민기구 편람과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들은 유엔난민기구 직원들 뿐만 아니라 정부, 법조인, 의사결정자, 사법부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⁸ 특히,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0 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 년 협약 제 1 조 제 A 항 제 2 호의 맥락에서 군복무에 기반한 난민 신청(“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0 호-군 복무”), 2014 년 11 월 12 일, www.refworld.org/docid/529ee33b4.html 과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2 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 년 협약과 1967 년 의정서 제 1 조 제 A 항 제 2 호 및 지역 협약상 난민의 정의에 근거한 무력 분쟁 및 폭력 사태에서의 난민 신청(“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2 호-무력 분쟁 및 폭력 양상”), 2016 년 12 월 2 일, www.refworld.org/docid/583595ff4.html.

⁹ 서울고등법원 2019.9.27. 선고 2019 누 471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28. 선고 2014 누 5209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10.10. 선고 2013 구합 13617 판결.

¹⁰ *Chan v. Canada (M.E.I.)*, [1995] 3 S.C.R. 593, 캐나다 대법원 1995 년 10 월 19 일 선고, www.refworld.org/cases,CAN_SC,3ae6b68b4.html 제 46 항 및 제 119 항; *Canada (Attorney General) v. Ward*, [1993] 2 S.C.R. 689, 캐나다 대법원 1993 년 6 월 30 일 선고, <https://scc-csc.lexum.com/scc-csc/scc-csc/en/1023/1/document.do> 713-714 면.

¹¹ *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Ex parte Adan*, 영국 상원 (사법위원회), 2000 년 12 월 19 일 선고, www.refworld.org/cases,GBR_HL,3ae6b73b0.html.

¹²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v. Cardoza-Fonseca*, 480 U.S. 421; 107 S. Ct. 1207; 94 L. Ed. 2d 434; 55 U.S.L.W. 4313, 미국 대법원, 1987 년 3 월 9 일 선고, www.refworld.org/cases,USSCT,3ae6b68d10.html.

¹³ *Al-Sirri (FC)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12] UKSC 54, 영국 대법원, 2012 년 11 월 21 일 선고, www.refworld.org/cases,UK_SC,50b89fd62.html 제 36 항. 유사한 맥락에서, 편람은 “협약상 의무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는 지침으로 특히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Ex parte Robinson*, 영국 항소법원(잉글랜드 및 웨일즈), 1997 년 7 월 11 일, www.refworld.org/cases,GBR_CA_CIV,3ae6b72c0.html 제 11 항.

[영문 원본의 비공식 번역본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영문본을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 편람과 지침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31 조 제 3 항 제 B 호에 따라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을 반영하는데 있어 유효한 해석의 출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¹⁴

5. 유엔난민기구는 정기적으로 의사결정권자 및 법원을 대상으로 1951년 난민협약 규정의 적절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많은 국가 및 지역 사법권에서 제 3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또는 다른 이해당사자가 직접 유엔난민기구에 접촉해 특정한 법적 사안에 대해 기구의 전문지식을¹⁵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6. 원고는 예멘에서 계속되는 무력 분쟁과 폭력 속에서 후티군과 정부군의 강제 모집의 위험 및 기타 학대 위험을 근거로 난민 신청을 한 예멘 국민입니다. 2019년 10월 23일 법무부는 원고의 난민신청을 불인정하며, (1) 내전과 강제 모집의 상황에서 박해에 대한 두려움은, 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여 1951년 협약의 사유가 되지 않고 (2) 원고가 예멘의 특정 정치 또는 종교 단체에 대해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불인정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7. 유엔난민기구는 본 의견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국제 난민법 개념의 해석에 관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 드리고자 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 의견서에서 현 상황에 대한 최신 국가 정황 정보와 함께 예멘에서 무력 분쟁과 폭력을 피해 탈출한 사람들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무력 분쟁 및 폭력 상황에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위험, 비국가 무장단체의 강제 모집 및 이로부터의 탈영, 그리고 위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가된 정치적 의견의 위험에 대한 해석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입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위의 쟁점과 관련된 법 원칙만을 설명 드리는 것이며, 난민 신청의 특정 사실관계 또는 각 당사자의 입장의 설명 또는 의견은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예멘에서의 무력 분쟁과 폭력을 피해 온 사람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 필요성의 의견

8. 유엔난민기구는 무력분쟁 및 폭력 상황에서 가해진 피해가 박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것이 협약 사유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취약한

¹⁴ *Pushpanathan v Canada (M.C.I.)*, [1998] 1 SCR 982 제 54 항; *R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Ex parte Adan and Others*, 주 10, 제 71 항.

¹⁵ *R (on the application of EM (Eritrea))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14] UKSC 12, 영국 대법원, 2014년 2월 19일 선고, www.refworld.org/cases,UK_SC,5304d1354.html, 제 72 항.

[영문 원본의 비공식 번역본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영문본을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지배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하고 만연한 위반, 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자행하는 인권법 위반 및 인권 침해가 존재하는 예멘에서의 현재 진행중인 무력 분쟁을 고려하였을 때, 유엔난민기구는 예멘에서의 민간인들의 피신을 난민 이동(refugee movement)의 성격이라고 규정하며, 다수가 계속 국제적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5년 4월에 발간된 예멘으로의 귀환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입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¹⁶ 1951년 협약의 난민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예멘 사람들은 국제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멘으로의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¹⁷

9. 예멘의 상황에 대한 상세한 최신 정보는 본 의견서의 부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력 분쟁과 폭력 속에서의 박해

10. 1951년 협약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문언에 맥락상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제 1조 제 A항 제 2호는¹⁸ 무력 분쟁 및 폭력 사태로부터 도피한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1951년 협약은 평시와 전시의 박해로부터 도피하는 난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 1조 제 A항 제 2호에 따라 요구되는 분석은 하나 이상의 협약 사유에 근거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한 두려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¹⁹

11. 무력 분쟁과 폭력 사태 속에서 신청인은 박해의 대상으로 지목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 전체 또는 인구 전체가 박해의 위험이 있어서 해당 집단에 속한 개개인이 박해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²⁰ 특정 지역 사회의 다수 혹은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해서, 특정 개인의 난민신청 사유의 유효성을 해치는 것은

¹⁶ 예멘 반환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입장, 2015년 4월, www.refworld.org/docid/5523fdf84.html, 특히 제 8항 및 제 9항.

¹⁷ 위의 글.

¹⁸ 제 1조 A항 제 2호에서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민족,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난민법 제 2항 제 1조에서도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난민법 (2012년 제정, 2016년 법률 14408호로 개정된 것)

¹⁹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2호- 무력 분쟁 및 폭력 사태, 제 10항.

²⁰ 위의 글, 제 17항.

[영문 원본의 비공식 번역본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영문본을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며²¹ 집단의 규모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개인의 두려움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무력 분쟁과 폭력의 상황이 전체 지역 사회나 민간인 일반에 미치는 영향은, 경우에 따라 특정 개인의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의 근거의 충분성을 약화하기 보다 오히려 강화합니다.²²

12. 예를 들어, 무력 분쟁 및 폭력 사태 속에서는 지역사회 전체가 공습이나 집속탄, 톱폭탄, 화학 무기, 포병 사격, 저격, 사제폭탄, 지뢰, 차량 폭탄, 자살 폭탄범, 포위 작전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위협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음식 및 의료용품의 체계적인 거부, 상수도 및 전기의 차단, 재산 파괴 또는 병원 및 학교의 군대화 또는 폐쇄는 전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인권 또는 국제인도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²³ 이러한 공격에의 노출은 개별적 또는 누적적으로 1951 년 협약의 제 1 조 제 A 항 제 2 호에 명시된 박해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²⁴
13. 유엔난민기구 편람은 또한 신청자의 개인적 경험 외에도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 친척 또는 동일한 인종 혹은 사회 집단의 구성원에게 일어난 일을 통하여 신청인 또한 조만간 박해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그의 두려움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²⁵
14. 협약상 사유와 연관되었거나 협약상 사유에 의해 추동되는 무력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정하는 논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²⁶ 이러한 접근방식의 오류를 설명하기 위해 저명한 난민법 학자들은 무력분쟁과 폭력사태가

²¹ 유엔난민기구, 1951 년 난민 지위 관련 협약 제 1 조의 해석, 2001 년 4 월, 제 20 항, www.refworld.org/docid/3b20a3914.html.

²²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2 호-무력 분쟁 및 폭력 사태, 제 17 항. 유럽인권재판소에 따르면 “잘 알려진 일반적인 위협에 근거한 비호 신청과 관련하여, 그러한 위협에 대한 정보가 다양한 출처를 통하여 자유롭게 확인될 수 있을 때, 추방 사건에서 협약 제 2 조 및 제 3 조에 따라 국가에 부과되는 의무는 당국이 자신의 조치에 수반되는 그러한 위협에 대한 평가를 이행하는 것이다.”; *F.G. v Sweden*, Application No. 43611/11, 유럽인권재판소, 2016 년 3 월 23 일 선고, 제 126 항: www.refworld.org/docid/56fd485a4.html.

²³ 충돌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관련 기준은 다음의 판결에서 제시되었습니다: *AM & AM (Armed Conflict: Risk Categories) Somalia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08] UKAIT 00091, 영국 이민 재판소/이민 항소 기관, 2009 년 1 월 27 일 선고, www.refworld.org/docid/4934f7542.html. 또한 다음의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Sufi and Elmi v. United Kingdom*, 2011 년 6 월 28 일 선고, 제 241 항, www.refworld.org/docid/4e09d29d2.html. *L.M. and Others v. Russia*, 2015 년 10 월 15 일 선고, 제 121 항, www.refworld.org/docid/561f770f4.html.

²⁴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2 호-무력 분쟁 및 폭력사태, 제 18 항.

²⁵ 유엔난민기구 편람, 제 43 항.

²⁶ Guy Goodwin-Gill and Jane McAdam,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3rd ed. 2007), 128 면.

[영문 원본의 비공식 번역본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영문본을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종학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위 논리에 따르면 그 누구도 난민지위를 받을 수 없음을 예로 제시합니다.²⁷ 유엔난민기구의 관점에 따르면, 특정 국가에 만연된 폭력이 일반화되고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과 1951 년 협약 상 사유 간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종종 잘못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국가 무장단체의 강제 모집, 이로부터의 탈영 및 전가된 정치적 견해

15. 무력분쟁 및 폭력 상황에서 박해는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 그리고 무력분쟁 및 폭력 상황에 연루된 하나 이상의 측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²⁸ 난민 지위는 분쟁과 폭력의 일방 또는 쌍방의 행위자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²⁹ 비국제적 무력 분쟁의 상황에서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정부에 대항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국가 무장단체에서 활동에 참여하였거나 모집 되었는지, 그리고 정부로부터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특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과거 비국가 무장단체에 모집된 사람이 현재 분쟁이 진행중인 국가 통제 지역으로 이주할 것을 기대하기란 많은 경우 불합리할 것이며,³⁰ 특히 갈등이 종교적이거나 민족적인 측면이 있는 경우에 그러합니다.³¹
16. 내전 또는 일반화된 폭력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 강제 또는 무력에 의한 강제 모집 위협은 합법적으로 모집할 자격이 없는 비국가 무장 단체로부터³² 종종 발생합니다.³³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제모집에 대한 두려움으로 국제적 보호를 바라는 사람은 난민 정의의 다른 요소들이 충족된 경우 난민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³⁴ 무엇보다, 국가가 그러한 강제모집에 대해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지와 제공할 의사가 없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³⁵

²⁷ 위의 글.

²⁸ 유엔난민기구 편람, 제 65 항;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무력 분쟁 및 폭력사태, 제 28 항;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0 호 - 군 복무, 제 52 항.

²⁹ 위의 글,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무력 분쟁 및 폭력사태, 제 28 항.

³⁰ 위 제 11 항 및 부록 상의 예멘 국가정황정보를 참조하십시오.

³¹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0 호 - 군 복무, 제 61 항.

³²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0 호 - 군 복무, 제 42 항.

³³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0 호 - 군 복무, 제 7 항 및 제 35 항. 또한, 위의 11 단락과 부록에 있는 예멘의 상황과 관련된 국가 정황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³⁴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0 호 - 군 복무, 제 35 항.

³⁵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0 호 - 군 복무, 제 35 항 및 제 43 항;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2 호 - 무력 분쟁 및 폭력 사태, 제 30 항.

[영문 원본의 비공식 번역본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영문본을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7. 비국가 무장단체의 강제모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나 의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국가가 무장 단체가 강제 모집을 하는 지역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국가 내 구조를 통해 효과적인 구제 방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³⁶
18. 어떤 상황에서는 국가가 영향을 받는 인구에 대해 보호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영토와 인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거나 그러한 통제가 유동적이거나 불확실한 경우입니다.³⁷ 이런 경우에는 특정한 행정적 권한의 행사와 국제 기구 또는 비국가 행위자의 영토 통제를 국가의 보호와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³⁸
19. 만약 두려움이 1951년 협약의 제 1조 A항 2호의 난민 정의 상의 하나 이상의 요건과 관련이 있다면, 국가의 효율적인 보호가 없어 비국가 무장단체의 강제모집 및 탈영으로 인한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두려움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의견서의 대상인 원고는 구체적인 정치적 의견이나 정치활동의 부재 등의 사유로 난민지위가 불인정되었으므로, 강제 모집 및 탈영이라는 맥락에서 발생하는 전가된 정치적 의견이 특히 중요합니다.
20. 정치적 의견에 관한 협약상 사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또는 신청인이 이러한 정치적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전가된 사실로 인해 박해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³⁹ 난민 정의는 1951년 협약의 보호를 받는 정치적 견해로 간주되기 위해 신청인이 자신의 믿음 또는 행위가 정치적임을 설명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관점에서는 정치적 의견의 개념은 포괄적이며 “국가, 정부, 사회, 혹은 정책이 관여된 모든 사항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든 포함될 수 있습니다.”⁴⁰

³⁶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0호 - 군 복무*, 제 44항 및 제 45항.

³⁷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0호 - 군 복무*, 제 30항. 또한, 위의 9 단락과 부록에 있는 예멘의 상황과 관련된 국가 정황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³⁸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2호 - 무력 분쟁 및 폭력 사태*, 제 41항.

³⁹ 유엔난민기구 편람, 제 28항. ‘정치적 의견’은 정치적 중립성이나 정치적 의견이 없는 것 또한 포함합니다. See *RT (Zimbabwe) and others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정치적 의견을 갖지 않을 권리 또한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지 않을 권리와 정치적 신념을 가질 권리를 달리 취급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유럽인권협약 제 10 조는 모든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견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포함해야 한다.” [2012] UKSC 38, 영국 대법원, 2012년 7월 25일 선고, 제 36항, www.refworld.org/cases,UK_SC,500fdacb2.html.

⁴⁰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호 - 젠더*, 제 32항,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0호 - 군 복무*, 제 52항,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2호 - 무력 분쟁과 폭력 사태*, 제 38항.

[영문 원본의 비공식 번역본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영문본을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1. 전가된 정치적 의견의 개념은 다양한 국가의 최고법원 및 항소법원에서 분석 및 인정된 바 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Canada(Attorney General) v. Ward* 사건에서 정치적 의견은 반드시 표현될 필요가 없으며, 인식되었거나 전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정치적 의견이 신청인의 진실한 믿음에 반드시 합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박해자의 인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전가된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가 “국가가 박해의 조력자는 아니지만 단순히 청구인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를⁴¹ 포함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국내 준군사조직과의 참여 및 이후 탈퇴로 인해 야기되는 박해에 대한 원고의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을 받아들였습니다.
22. 영국 대법원도 “간주된 의견을 사유로 개인이 박해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원칙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⁴² 최근 영국의 상급 행정심판소(Upper Tribunal)는 *MSM (Somalia)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판결에서 유럽연합 난민보호지침 제10조 제1항 제e호의 “정치적 의견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제6조에서 언급된 잠재적 박해자 및 이들의 정책과 방식에 관한 의견, 생각과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는지 여부와 무관하다”는 문언을 인용하며 “위 문언은 실제적 및 간주된 정치적 의견을 모두 포함한다. 두 의견 모두 보호의 대상이다”라고⁴³ 결론 지었습니다.
23. 무력 분쟁 및 폭력사태에서는 이에 관련된 당사자의 전략, 전술 또는 활동에 반대하거나 중립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경우, 당사자들에게 동조, 지원 또는 경제적으로 기여하길 거부할 경우, 또한 당사자들의 편을 들지 않거나 이들의 규범 및 관습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에, 박해자의 관점에서 박해자의 정치적 목표에 비판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⁴⁴ 종교적 또는 사회적 관습 및 관행을 위협하는 태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박해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행위나 행위의 부재는 다른 정치적 의견이나 종교적 (또는 비종교적) 신념이 있거나, 특정 민족 혹은 사회 집단과 관련이 있거나 소속되었다고 박해자가 여기거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⁴⁵ 이러한 경우, 박해자의 인식은 박해에 대한 두려움과 정치적 의견의 협약 상의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난민 사유 근거(또는 다른 근거)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족하기에 충분합니다. 박해자가 비정부 무장단체일 때, 박해자가 협약

⁴¹ *Canada (Attorney General) v. Ward*, [1993] 2 S.C.R. 689, 캐나다 대법원, 1993년 6월 30일 선고, 746-747면 <https://scc-csc.lexum.com/scc-csc/scc-csc/en/1023/1/document.do>.

⁴² *RT (Zimbabwe) and others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위의 주 60 참고, 제 36 항.

⁴³ *MSM (journalists; political opinion; risk) Somalia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15] UKUT 00413 (IAC), 영국 상급 행정재판소, 2015년 7월 30일 선고, 제 33 항, www.refworld.org/cases,GBR_UTIAC,55ba10194.html.

⁴⁴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12호 - 무력 분쟁과 폭력 사태*, 제 37 항.

⁴⁵ 위의 글.

[영문 원본의 비공식 번역본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영문본을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유로 신청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국가가 협약 관련 사유로 신청인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 인과관계가 확립됩니다.⁴⁶

24. 따라서, 강제 모집 및 탈영과 관련된 비호신청 사건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과 1951 년 협약 상의 정치적 의견의 난민사유와의 ‘연관성’ 또는 인과관계를 이유로 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강제모집과 관련된 행위는 실제적이거나 전가된 정치적 의견으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후자와 관련하여, 박해자들은 개인의 분쟁 참여 거부를 그들의 정책에 대한 정치적 이견 또는 반대세력을 지지하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영은⁴⁷ 그 자체로 정치적 의견의 표현이거나, 그러한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⁴⁸

강제송환금지 원칙

25. 1951 년 협약 상 난민 정의에 포함된 기준을 신청자가 충족하게 되는 즉시 해당인은 협약에 따라서 난민이 됩니다. 이와 같이 난민 지위 결정은 본질적으로 선언적인 것입니다. 인정으로 인해 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인정된 난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지위가 결정되지 않은 비호 신청자에게도 적용됩니다.⁴⁹ 영국 대법원에서는 최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951 년 협약에 따르면 개인이 난민임을 인정하는 것은 선언적인 행위이다. 개인을 다시 송환하지 않을 의무는 체약국이 개인이 난민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인정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이 "난민"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이유로 난민은 체약국이 난민 지위 부여 여부를

⁴⁶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0 호 - 군 복무*, 제 48 항. 또한,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2 호: 1951 년 협약 제 1 조 제 A 항 제 2 호의 맥락에서 “특정 사회적 단체의 구성원”과 난민의 지위와 관련된 1967 년 의정서, 2002 년 5 월 7 일, 제 23 항, www.unhcr.org/refworld/docid/3d36f23f4.html.

⁴⁷ 탈영은 허가 없이 개인의 의무 혹은 보고를 저버리는 것과 군복무에 대한 소집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국가법에 따라서 징병 연령이 되어 군복무를 마쳤지만 여전히 군복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어떤 상황에서는 탈영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탈영은 경찰, 헌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안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비국가 무장 단체의 탈영병에게 적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탈영은 양심상의 이유나 다른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0 호 - 군 복무*, 제 3 항.

⁴⁸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0 호 - 군 복무*, 제 52 항.

⁴⁹ 유엔난민기구 편람, 제 28 항. 아울러,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 6 호(XXVIII) - 1977, (c)항;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 79 호(XLVII) - 1996, (i)(j)항; 유엔난민기구, 유엔난민기구 1975-2017 집행위원회 채택 국제적 보호에 관한 결정문(결정문 제 1 - 114 호), 2017 년 10 월, www.refworld.org/docid/5a2ead6b4.html. 집행위원회 내 한국의 지위 및 참여에 대해서는 아래 주 87 을 참조하십시오.

[영문 원본의 비공식 번역본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영문본을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정하는 동안 체약국의 영토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강제송환으로부터 보호된다.⁵⁰

26. 유엔난민기구는 국가의 행위로 인해 개인이 다른 국가에서 박해 또는 부당대우를 받을 위험에 노출되고, 특히 해당인이 그러한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표명한 경우, 또는 그가 속한 개인이나 집단의 개별 상황이나 특성이 국가가 인식해야 하는 위험을 표출하는 경우에는 항상 강제송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⁵¹

27.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개인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는 영토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지 않아야 할 국가의 의무, 즉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국제 난민법의 초석이며,⁵² 1951 년 협약 제 33 조에 다음과 같이 주요하게 명시되었습니다.⁵³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된다.”⁵⁴

⁵⁰ *G v G*, [2021] UKSC 9, 영국 대법원, 2021 년 3 월 19 일 선고, 제 81 항, www.bailii.org/uk/cases/UKSC/2021/9.html.

⁵¹ 유엔인권재판소 *Hirsi and Others v. Italy* 사건에서의 유엔난민기구 구두의견 4 면 참조 <https://www.refworld.org/pdfid/4e0356d42.pdf>. *N.D. and N.T. v. Spain* 사건에서의 유엔난민기구 구두의견 제 6 면 참조 <http://www.refworld.org/docid/5bb3873b4.html>.

⁵² Elihu Lauterpacht 및 Daniel Bethlehem,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범위와 내용: 의견”, E. Feller, V. Türk 및 F. Nicholson (편), 국제법 하에서의 난민보호: 국제적 보호에 관한 유엔난민기구의 국제 협의,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87-177 면 참조. 유엔난민기구, 난민지위에 관한 1951 년 협약과 1967 년 의정서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의무의 역외 적용에 관한 자문의견, 2007 년 1 월 26 일, www.unhcr.org/cgi-bin/texis/vtx/refworld/rwmain?docid=45f17a1a4. 유엔난민기구,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참고 사항*, www.unhcr.org/refworld/docid/438c6d972.html 참조.

⁵³ 1951 년 협약의 일부 조항과 달리, 제 33 조는 체약국가의 영토에 있는 난민들의 합법적인 체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⁵⁴ 1951 년 협약 제 33 조 제 2 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를 예정하는 반면, 국제인권법과 대부분의 지역적 난민 문서들은 그 어떠한 예외도 없는 절대적 금지를 규정합니다.

[영문 원본의 비공식 번역본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영문본을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8.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국제 난민 보호의 필수적이고 구속력 있으며 훼손할 수 없는 구성요소로서, 여러 국제⁵⁵ 및 지역 난민 문서들과⁵⁶ 인권 문서에⁵⁷ 재차 명시되었습니다. 위 문서들과 더불어, 여러 국가의 헌법 및 국내법 역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문서들과 더불어, 여러 국가의 헌법 및/또는 국내법 역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⁵⁸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국제관습법적 규범으로 1951 년 협약과 1967 년 의정서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가를 구속합니다.⁵⁹ 근본적이고 훼손할 수 없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성격은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의 여러 결정문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습니다.⁶⁰

⁵⁵ 1951 년 협약 제 42 조 제 1 항과 1967 년 의정서 제 VII 조 제 1 항은 제 33 조를 1951 년 협약의 규정 중 유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조항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⁵⁶ 아시아-아프리카 법적 자문 위원회가 1966 년 방콕에서 열린 8 차 회의 당시 채택한 난민의 처우에 관한 방콕 원칙 제 3 조 제 3 항 참조. 해당 조항은 “최우선시되는 국가안보 또는 주민보호의 사유를 제외하고, 본 원칙에 따라 비호를 구하는 그 어떠한 사람도 생명, 신체적 완전성 또는 자유를 위협하는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 해당 영토로의 귀환 또는 영토에서의 체류로 귀결되는 국경에서의 거부, 송환 또는 강제퇴거와 같은 조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다음 협약에도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통일기구(OAU), 아프리카 난민 문제의 특수한 양상에 관한 협약(“OAU 협약”) 제 II 조 제 3 항, 그리고 난민에 관한 카타헤나 선언, 중앙 아메리카, 멕시코와 파나마 내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콜로키엄, www.refworld.org/docid/3ae6b36ec.html.

⁵⁷ 명시적 강제송환 금지 규정은 1984 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 3 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역시 회복 불가능한 침해의 실제 위험이 있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개인을 해당 국가의 영토에서 인도, 퇴거, 추방 기타 이동시켜서는 안될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20 호: 제 7 항(고문 또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 대우 또는 처벌의 금지), 1992 년 3 월 10 일, U.N. Doc. HRI/ GEN/1/Rev.7, 제 9 항 및 규약 당사국의 일반적 법적 의무의 성격에 관한 일반 논평 31 호, U.N. Doc. CCPR/C/21/Rev.1/Add.13, 2004 년 5 월 26 일, 제 12 항 참조. 미주 대륙의 경우,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인권에 관한 아메리카 협약 제 22 조 제 8 항에 새겨져 있습니다. 위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출신국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인을 인종, 국적, 종교, 사회적 지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생명 또는 자유에 관한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강제퇴거 하거나 송환해서는 안된다.” 한편 유럽인권재판소는 강제송환금지가 유럽인권협약 제 3 조에 내재된 의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⁵⁸ 유엔난민기구, 강제송환금지에 관한 지침, 1977 년 8 월 23 일, 제 11 항, www.refworld.org/docid/3ae68ccd10.html, 결론 III(5): 난민에 관한 카타헤나 선언, 주 78 참조. 자문 의견 OC-21/14 “이주환경에서 또는 국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권리 및 보장”, 미주 인권 재판소 2014 년 8 월 19 일 선고, 제 211 항, www.refworld.org/cases,IACRTHR,54129c854.html 및 자문 의견 OC-25/18, 미주인권재판소 2018 년 5 월 30 일 선고, 제 181 항, www.refworld.org/cases,IACRTHR,5c87ec454.html 에서 위 원칙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⁵⁹ 위의 글, 자문 의견 OC-21/14, 제 211 항.

⁶⁰ 고등판무관 집행위원회(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또는 “ExCom”)은 현재 107 개 유엔 회원국과 교황청으로 구성된 정부간 기구입니다. 대한민국은 집행위원회의 활동 회원국입니다. 임무 중 최고 책임자인 집행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보호 권한을 행사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집행이사회 결정문 25 호

29. 강제송환(refoulement)의 금지는 강제퇴거(deportation), 추방(expulsion), 인도(extradition), 비공식적 이동(informal transfer) 또는 ‘송환(rendition)’과 국경에서의 입국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퇴거(removal)에 적용됩니다.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in any manner whatsoever)’ 추방(expulsion) 또는 송환(refoulement)이 금지된다는 1951 년 협약 제 33 조 제 1 항의 문언에서도 명백합니다.⁶¹ 위 문언은 열거적이지 않은 넓은 범위의 국가 행위들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30. 강제송환금지 의무 중 일부에 따라, 각국은 출신국 또는 제 3 국으로 퇴거조치를 집행하기 전에 자국 영토 또는 관할로부터 퇴거시키려는 사람에게 박해, 심각한 인권침해 또는 다른 심각한 위해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⁶² 국가는 해당인이 보호를 구하는 이유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퇴거명령을 집행하기 이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합니다.⁶³ “일반적으로, 1951 년 협약 및 1967 년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각국은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는 이에게 영토로의 접근을 허용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비호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⁶⁴

(XXXIII) 1982, (b); 29 호 (XXXIV) 1983, (c)항; 50 호 (XXXIX) 1988, (g)항; 52 호 (XXXIX) 1988, (5)항; 55 호 (XL) 1989, (d)항; 62 호 (XLI) 1990, (a)항 (iii); 65 호 (XLII) 1991, (c)항; 68 호 (XLIII) 1992, (f)항; 71 호 (XLIV) 1993, (g)항; 74 호 (XLV) 1994, (g)항; 77 호 (XLVI) 1995, (a)항; 81 호 (XLVIII) 1997, (h)항; 82 호 (XLVIII) 1997, (d)(i)항; 85 호 (XLIX) 1998, (q)항; 91 호 (LII) 2001, (a)항; 94 호 (LIII) 2002, (c)(i)항; No. 99 (LV) 2004, (1)항; 103 호 (LVI) 2005, (m)항; 108 호 (LIX) 2008, (a)항.

⁶¹ 유엔난민기구,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 년 협약과 1967 년 의정서에 따른 송환금지 의무의 역외 적용에 관한 자문의견, 2007 년 1 월 26 일(‘유엔난민기구 자문의견’), 제 7 항, www.refworld.org/docid/45f17a1a4.html.

⁶² 유엔난민기구, 유럽인권재판소 *A.S.N and T.K.M v The Netherlands*, 2018 년 3 월 20 일, 68377/17: www.refworld.org/docid/5b9283cc4.html. 아울러 유엔난민기구, 유럽인권재판소 *D.A. and others v. Poland* 사건에 제출된 유엔난민기구 의견서, 2018 년 2 월 5 일, 51246/17, www.refworld.org/docid/5a9d6e414.html.

⁶³ 유럽인권재판소, *M.S.S. v. Belgium and Greece*, Appl. no. 30696/09, 2011 년 1 월 21 일, 제 359 항, <http://www.refworld.org/docid/4d39bc7f2.html>. *Final Appeal Nos 18, 19 & 20 of 2011 (Civil) between C, KMF, BF (Applicants) and Director of Immigration, Secretary for Security (Respondents) and UNHCR (Intervener)*, 홍콩 중심법원, 2013 년 3 월 25 일 선고, 제 56 항 및 제 64 항, www.refworld.org/docid/515010a52.html; 유엔난민기구, 홍콩 특별행정구역 중심법원의 C, KMF, BF (Applicants) and Director of Immigration, Secretary for Security (Respondents) 사건에 대한 의견서, 2013 년 1 월 31 일, 민사 상소 2011 년 제 18, 19 및 20 호, 제 74 항 및 제 75 항, www.refworld.org/docid/510a74ce2.html.

⁶⁴ 1951 년 협약과 1967 년 의정서는 난민지위인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는 대량 난민 발생 상황의 맥락 외에 1951 년 협약의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적용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비호 절차(공정하고 효율적인 비호 절차), EC/GC/01/12, 2001 년 5 월 31 일, 제 4-5 항 참조. 또한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 81 호 (XLVI) (1997), 제(h)항; 결정문 제 82 호(XLVII) (1997), 제(d)(iii)항; 결정문 제 85 호(XLIX) (1998), 제(q)항; 결정문 제 99 호 (LV), 2004, (l)항 참조. 또한, P. Weis, 난민 협약: 입안과정(Travaux Préparatoires)에 대한 분석 해설 및 논평, CUP, Cambridge (1995), 342 면 참조.

31. 유엔난민기구는 1951 년 협약에서 제시된 난민 지위 기준들이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되어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적절히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⁶⁵ 비호신청자가 1951 년 협약의 난민 지위 기준 또는 보다 포괄적인 난민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 난민 문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국제 또는 지역 인권법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의무에 근거한 인도주의적 또는 보충적 보호 지위를 포함한 여타의 보완적인 형태의 국제적 보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⁶⁶
32. 이러한 단계적 접근법이 적절히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단일 절차를 마련하여 중앙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먼저 비호 신청자가 난민 지위 자격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여타의 보충적 형태의 보호 필요성을 평가할 것을 유엔난민기구는 권고합니다.⁶⁷ 이러한 절차는 공정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절차중단의 효과가 있는 불복의 권리와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해야 합니다.⁶⁸
33. 보충적 보호의 맥락에서, 필수적인 절차적 보호장치가 없는 보호는 결국 신청인의 강제송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⁶⁹

결론

34. 유엔난민기구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⁶⁵ 유엔난민기구, 보충적 형태의 보호를 포함한 국제 보호 제공, 2005 년 6 월 2 일, EC/55/SC/CRP.16, 제 6 항 및 제 26 항, www.refworld.org/docid/47fdb49d.html.

⁶⁶ 고문방지협약, 1984 년 12 월 10 일, UNTS, Vol. 1465 www.refworld.org/docid/3ae6b3a94.html, 85 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96 년 12 월 16 일, UNTS, Vol. 999 www.refworld.org/docid/3ae6b3aa0.html 171 면, *유럽인권협약*: 1950 년 11 월 4 일, <http://www.refworld.org/docid/3ae6b3b04.html> 참조.

⁶⁷ 유엔난민기구, 국제 보호/제 3 의 트랙에 관한 국제 협의: 보충적 보호, 2001 년 9 월 4 일, EC/GC/01/18: www.refworld.org/docid/3bfa84345.html. 집행 이사회 결론 8 번 <https://www.unhcr.org/excom/exconc/3ae68c6e4/determination-refugee-status.html>.

⁶⁸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 호 - 젠더*, 제 32 항,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2 호 - 무력 분쟁과 폭력 사태*, 제 8 항 및 제 87 항, 제 52 항,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2 호 - 무력 분쟁과 폭력 사태*, 제 38 항; 집행 위원회 결정문 87 호 제(L)조 1999, 제(f)항; 89 호 제(L)조, 2000. 유엔난민기구, 보충적 형태의 보호를 포함한 국제 보호 제공, 2005 년 6 월 2 일, EC/55/SC/CRP.16, 제 27 항: www.refworld.org/docid/47fdb49d.html.

⁶⁹ Ruma Mandal, *1951 년 협약 외부의 보호체계 ("보충적 보호")*, 2005 년 6 월, PPLA/2005/02, www.refworld.org/docid/435e198d4.html.

[영문 원본의 비공식 번역본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영문본을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국가의 폭력 사태가 일반화되고 만연해 있다는 사실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과 1951 년 협약상 사유 간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유엔난민기구의 지침은 무력 분쟁 사태에서 이러한 폭력으로부터 도피한 사람들 중 많은 경우, 난민 정의에 포함된다고 제시합니다.
- 난민 지위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은 보충적 보호가 아닌, 1951 년 협약 및 1967 년 의정서에 따라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난민 지위 기준을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강제 모집과 이에 따른 탈영과 관련된 비호 신청은 1951 년 협약 상의 박해에 대한 근거 있는 두려움과 정치적 의견 박해사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에 기반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강제 모집과 탈영은 실제적 혹은 전가된 정치적 견해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강제모집과 관련된 행위는 실제적이거나 전가된 정치적 의견으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후자와 관련하여, 무력분쟁의 행위자들은 개인의 분쟁 참여 거부를 그들의 정책에 대한 정치적 이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탈영은 그 자체로 정치적 의견의 표현이거나, 그러한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멘에서 일어나는 장기화된 무력 분쟁과 인도주의적 위기를 고려했을 때, 예멘 후티군에서 강제모집되었다가 탈영한 사람들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박해 사유, 즉 실제적 또는 전가된 정치적 의견 및/또는 다른 관련 사유에 근거하여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는 근거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 난민으로서 국제적 보호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국제난민법과 국제인권법의 필수적이고 구속력 있으며 훼손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국가의 행위가 해당 개인을 타국에서의 박해 또는 학대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경우 개인을 강제송환으로부터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이 발생함을 강조합니다.

유엔난민기구

2020 년 8 월 31 일